

[별표 6]

전문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의 자격요건(제19조제2항 관련)

구 분	자격요건
역 량 개 발 전문분과위원	◦ (내부위원) 현장지휘 이론과 절차에 경험과 식견이 탁월한 자 ◦ (외부위원) 교육·심리·재난·리더십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역 량 평 가 전문분과위원	◦ (내부위원) 현장지휘 경험과 식견이 탁월한 자 ◦ (외부위원) 교육·평가·심리·재난·정신의학·리더십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